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차량 소유 형태의 다변화 반영 및 저출산 위기 대응 지원을 위해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에 각각 장애인·유공자가 장기 임차·대여한 차량 및 다자녀 가구의 부모가 소유 또는 장기 임차·대여하고 승차한 차량을 포함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비영업용 차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말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비영업용 차량에 한하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상 용도가 영업용이라 하더라도 해당 차량이 유상운송이 아닌 당해 독립유공자의 이동 편의만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에는 비영업용 차량으로 본다) 중 당해 독립유공자가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에게 통행료 감면 신청을 한 차량으로서, 독립유공자당 1대의 차량을 말한다.”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비영업용 차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말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비영업용 차량에 한하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상 용도가 영업용이라 하더라도 해당 차량이 유상운송이 아닌 당해 국가유공자, 5·18민주운동부상자, 장애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이동 편의만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에는 비영업용 차량으로 본다) 중 당해 감면대상자가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에게

통행료 감면 신청을 한 차량으로서, 감면대상자당 1대의 차량을 말한다.”로 한다.

제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영 제8조제1항제1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비영업용 차량에 한하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상 용도가 영업용이라 하더라도 해당 차량이 유상운송이 아닌 당해 다자녀 가구(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부 또는 모와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이 함께 등재되어 있는 가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동 편의만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에는 비영업용 차량으로 본다) 중 당해 다자녀 가구의 부 또는 모가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에게 통행료 감면 신청을 한 차량으로서, 다자녀 가구당 1대의 차량을 말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제5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제5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제5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5항에 해당하여 전자적인 지급수단 중 다자녀 가구 차량 전용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모두를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다만, 주민등록표상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2. 자동차등록증 사본. 다만,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사본

제5조제8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차량을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에 대한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사본을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에게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③ 영 제8조제1항제1호의4에서 “국 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이라 함은 <u>비영업용 차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말한다.</u>	제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③ 영 제8조제1항제1호의4에서--- -----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비영업용 차량에 한하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 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은 「자동차관리 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 원부상 용도가 영업용이라 하더 라도 해당 차량이 유상운송이 아닌 당해 독립유공자의 이동 편의만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에 는 비영업용 차량으로 본다)</u> 중 당해 독립유공자가 유료도로관 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에 게 통행료 감면 신청을 한 차량 으로서, 독립유공자당 1대의 차 량을 말한다.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영 제8조제1항제2호·제2호의2 · 제3호 및 제4호에서 “국토교통 부령이 정하는 차량”이라 함은 <u>비영업용 차량으로서 다음 각</u>	④ 영 제8조제1항제2호·제2호의2 · 제3호 및 제4호에서-----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u>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말한다.

1. ~ 5. (생략)

<신설>

하는 차량(비영업용 차량에 한하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상 용도가 영업용이라 하더라도 해당 차량이 유상운송이 아닌 당해 국가유공자, 5·18민주운동부상자, 장애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이동 편의만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에는 비영업용 차량으로 본다) 중 당해 감면대상자가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에게 통행료 감면 신청을 한 차량으로서, 감면대상자당 1대의 차량을 말한다.

1. ~ 5. (현행과 같음)

⑤ 영 제8조제1항제1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비영업용 차량에 한하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

<신 설>

원부상 용도가 영업용이라 하더라도 해당 차량이 유상운송이 아닌 당해 다자녀 가구(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부 또는 모와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이 함께 등재되어 있는 가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동 편의만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에는 비영업용 차량으로 본다) 중 당해 다자녀 가구의 부 또는 모가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에게 통행료 감면 신청을 한 차량으로서, 다자녀 가구당 1대의 차량을 말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⑥ 제5항에 대하여 전자적인 지급수단 중 다자녀 가구 차량 전용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모두를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다만, 주민등록표상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부

⑦ 제6항제3호에 따른 식별표지를 발급받으려거나 같은 호에 따른 증명에 갈음하기 위하여 전자적인 증명수단을 등록하려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장애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관계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관련 증명서를 갖추어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자동차등록증 사본. 다만, 1
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
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
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시설대
여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사
본

(8) -----

----- . 다만,
차량을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
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에
대한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차
계약서 사본을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에게 추
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⑧ (생 략)

⑨ (현행 제8항과 같음)